

# 터스틴 시

## 미납자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 중단 정책

시 행정 담당관이 운영  
발효일: 2020 년 02 월 01 일  
개정일: 2021 년 05 월 12 일

## 세금 미납자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 중단 정책

다른 정책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미납자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 중단 정책(이하 "정책")은 이 문서에서 정한 조항에 따라 미납자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 중단 정책을 적용할 것입니다. 다른 정책 혹은 규정과 이 정책이 충돌하면, 이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I. 정책의 적용; 연락할 전화번호:** 이 정책은 생활용수 공공사업 이용에만 적용됩니다. 현존 정책과 절차 모두 상업 용수, 공업용수 공공사업 이용에 계속 적용됩니다. 이용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 요금 납부, 이 정책에서 정한 대안 수립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수도 요금 담당자(전화번호 714-573-307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II. 미납자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 중단:**

A. 요금 청구와 납부: 수도 요금은 고객에게 2달에 한 번 청구됩니다. 요금은 청구일부터 납부 가능하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납부는 City of Tustin, 300 Centennial Way, Tustin, CA 92780 주소에서 하시거나 온라인 [www.tustinca.org](http://www.tustinca.org)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특정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는 일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부분 납부는 사전 승인이 없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1. 계량기는 2개월마다 발행되는 청구서를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되며, 공급 개시와 종료를 위해서도 확인됩니다.
2. 청구서는 청구되는 요금을 위한 현재와 과거의 계량기 수치, 청구 단위 수, 현재 계량기 수치의 공급 날짜와 일자를 보여줍니다.
3. 요금은 미국의 법정 통화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서술한 바에도 불구하고 터스틴 시는 요금의 동전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B. 요금 연체: 청구일에서 60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연체 알림: 청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요금 연체와 공급 중단 알림(“연체 알림”) 통지서가 수도 이용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연체 알림 통지서는 확인된 공급 중단 일에서 적어도 업무일 기준 7일 전에 송달됩니다. 이 정책에서 “업무일”은 시 행정부가 업무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우편 주소가 수도를 공급받는 주소와 동일하지 않다면 연체 알림 통지서는 실제 이용 중인 주소에 “입주자”를 받는 사람으로도 송달됩니다. 연체 알림 통지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a) 고객의 이름과 이용 주소
- b) 미납 요금 금액
- c)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
- d) 미납 요금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절차 설명 (아래 섹션 III 참고)
- e)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 확인과 이의 제기 신청 절차 설명 (아래 섹션 IV 참고)
- f) 납부 임시 연기 신청 혹은 납부 일정 재조정 신청 절차 설명 (아래 섹션 III 참고)

터스틴 시는 연체 알림 통지서와 더불어 고객에게 공급 중단 최소 5일 전에 전화로 연체 사실과 함께 공급 중단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만약 연체 알림이 전화로 전달되었다면 시 행정부는 고객에게 이 정책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고, 아래의 섹션 III에서 설명하는 대로 납부 임시 연기나 납부 대안에 대한 선택 사항도 안내해야 하며, 아래의 섹션 IV에서 설명하는 대로 고객의 요금 검토와 이의 제기 절차까지 알려야 합니다.

2.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음: 시 행정부가 전화로 연락했을 때 고객과 통화를 할 수 없거나 거주지에 성인이 없는 경우, 그리고 연체 알림 우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시 행정부는 선의를 다하여 주소지를 방문하여 미납으로 인한 공급 중단 임박 알림 통지서와 이 정책

사본을 전달하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할 것입니다. (주소지 방문)

3. 연체료와 주소지 방문 요금: 연체 알림 통지서 전달 혹은 주소지 방문이 수행되기 전에 미납 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시 행정부가 정한 요금에 따라 연체료가 계산되어 고객의 미납 요금에 추가됩니다.
4. 공급 중단 기한: 수도 요금은 반드시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의 오후 4시 30분 전까지 시 행정부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우편물 소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반려 수표 알림: 수도 혹은 기타 요금 납부에서 반려 수표가 수납되면 시 행정부는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 행정부는 고객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리고, 주소지의 수도 공급 중단을 통지합니다.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반려 수표의 금액과 반려 수표 요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수도 공급이 중단됩니다. 기한은 연체 알림 통지서 혹은 주소지 방문에서 정한 날짜보다 이후여야 하며, 연체 알림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반려 수표로 납부된 통지서 날짜에서 60일 이후여야 합니다. 반려 수표에 대한 지불과 반려 수표 요금 납부는 전 금액을 현금, 신용 카드, 공인된 화폐로 지불해야 합니다.
6. 반려 수표로 납부된 미납자에 대한 수도 공급 중단:
  - a) 수표를 제공하여 지불이 승인되었고, 미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었던 수도가 다시 공급되었지만 수표가 양도 불능일 경우, 시 행정부는 서면 통지 최소 3일 이후에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이용은 미납 요금이 현금, 신용 카드, 공인된 화폐로 납부한 경우에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이용이 회복되면 계정에 1년 동안 양도 불능인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b) 위에서 서술한 1년 안에 고객의 이용이 다시 미납으로 중지된다면, 시 행정부는 고객에게 다시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현금, 신용 카드, 공인된 화폐를 지불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조정:

a)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시 행정부는 연체 알림, 주소지 방문, 추가 요금 감면의 조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조정에서는 최근 12개월 동안 공제액 1회를 넘지 못합니다.

b) 고객의 요청으로 시 행정부는 주소지에서 누수로 인한 높은 요금이 나오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 2개월마다 청구하는 수도 요금에서 용수 사용량 감면 조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수는 반드시 시 행정부에서 눈으로 확인해야 하며, 고객은 반드시 수리의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누수의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확인 후 조정이 적용됩니다. 이 조정에서는 최근 12개월 동안 공제액 1회를 넘지 못합니다.

C. 공급 중단 금지 조건: 터스틴 시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미납으로 인한 생활용수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1. 건강 상태 – 고객 혹은 고객의 세입자가 수도 공급 중단이 (i) 생명의 위협이 되거나, (ii)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1차 의료 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2. 재정적인 불능 상태 – 고객이 시의 청구 기간 이내에 수도 요금 납부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고객의 가정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음의 상황인 경우 고객은 “재정적으로 납부 불능” 상태로 간주됩니다. (i) 현재 다음 보조금을 받는 사람: CalWORKS, CalFresh, 일반 보조금, Medi-Cal, SSI/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ii) 고객의 연간 수입이 연방 빈곤 기준의 200%보다 적게 신고되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는 연방 빈곤 기준은 다음

링크 참고: <https://www.healthforcalifornia.com/covered-california/income-limits>)

3. 지불 대안 조정 – 고객은 아래 섹션 III 조항에 따라 납부 일정 조정, 연기된 납부 일정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 D. 수도 공급 중단을 금지하는 상황 결정 절차: 위의 (C) 부분에서 서술된 조건에 부합하는 부담이 고객에게 있습니다. 시 행정부가 고객의 지원 요청을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위해 고객은 수도 공급 중단 일자 전에 항목 (C)(1)에서 서술한 진단서, 항목 (C)(2)에서 서술한 재정적인 불능을 증명할 문서 제출이 권장되고, 항목 (C)(3)에서 서술한 납부 대안 조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문서를 접수한 후 시의 재정 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은 가능한 대안 조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시에서 고객에게 참여하게 하는 아래의 섹션 III 에서 서술될 납부 조정 대안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문서를 검토하고 고객에게 7 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시 행정부가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고객은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시 행정부는 추가 정보를 받고 5 일 이내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항목 (C)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알리거나, 서면으로 시에서 고객에게 참여하게 하는 아래의 섹션 III 에서 서술될 납부 조정 대안을 알립니다. 항목 (C)에서 서술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고객은 벌금과 추가 요금을 포함한 미납 금액을 다음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i) 시 행정부에서 고객에게 자격 미달을 알린 후 업무일 기준 2 일, (ii) 연체 알림 통지서에 명시된 공급 중단 일
- E.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특별 규정: 고객은 다음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간주됩니다. (i) 고객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현재 다음 보조금을 받는 경우: CalWORKS, CalFresh, 일반 보조금, Medi-Cal, SSI/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ii) 고객의 연간 수입이 연방 빈곤 기준의 200%보다 적게 신고되었을 때(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는 연방 빈곤 기준은 다음 링크 참고: <https://www.healthforcalifornia.com/covered-california/income-limits>) 고객이 두 경우 중 하나를 입증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1. 재연결 수수료: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연결되면, 시의 업무 시간 중 재연결 수수료는 \$50 를 넘을 수 없고, 업무 시간 외 재연결 수수료는 \$150 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수수료는 실제 재연결 비용이 법정 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는 Customer Price Index for the Los Angeles-Long Beach-Anaheim metropolitan area 에서 매년 조정되며, 이 규정은 2021 년 1 월 1 일에 시작했습니다.
2. 벌금 면제: 시 행정부는 12 개월마다 모든 벌금/수수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F. 집주인-세입자의 경우: 아래 절차는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기록상 고객이고, 수도 요금 납부의 책임자인 개별로 측정되는 단독 주택, 다세대 주거 공간, 이동 주택 공원에 적용됩니다.

1. 필요한 알림:

- a. 시 행정부는 다세대 주거 공간 혹은 이동식 주택 공원의 경우 수도 공급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입자/거주자에게 수도 공급 중단 최소한 10 일 전에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단독 주택의 경우 수도 공급 중단 7 일 전에 보내야 합니다.
- b. 세입자/거주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지서로 알려야 하며, 그들은 미납 요금 납부 없이 수도 요금이 청구되는 고객(아래 항목 2 참고)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2. 세입자/거주자가 고객이 되기:

세입자/거주자가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도시의 요구 사항과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면 시 행정부는 세입자/거주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a. 하지만 (i) 한 명 이상의 세입자/거주자가 도시의 요구 사항에 맞춰 다음 요금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ii) 도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입자/거주자에게 수도 공급을 선택적으로 중단할 물리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 시 행정부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세입자/거주자에게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b. 일정 기간 이전 서비스가 도시에 신뢰를 주고 보증금 요구 면제를 하는 조건인 경우, 그 기간 동안 거주 기록과 임대료 즉시 지불은 그에 상응하는 조건입니다.
- c. 세입자/거주자가 도시의 고객이 되고, 세입자/거주자가 지불하는 임대료에 수도 요금이 포함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거주자는 앞으로의 임대료에서 사전 지불 기간 동안 도시에 지불되는 합리적인 요금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II. 지불 대안 조정:** 위에서 서술한 섹션 II(C)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은 섹션 II(D)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 행정부는 신중하게 선택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하나의 지불 대안 조정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i) 아래의 항목 (A)에 따른 납부 일정 조정, (ii) 아래의 항목 (B)에 따른 납부 일시 연기. 섹션 II(C)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은 아래의 항목 (C)에 따른 납부 기한 일시 연장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시의 재정 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문서를 검토하고, 고객의 재정 상황과 도시의 납부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으로 가장 적절한 지불 대안 조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A. **납부 일정 조정:** 일반 납부 기한 이내에 수도 요금 납부가 불가능하며 섹션 II(C)에서 정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시에서 확인한 고객은 미납 요금에 대하여 다음에 따라 도시가 선택한 납부 일정 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 **상환 기간:** 고객은 아래의 항목 (2)에서 정한 관리 수수료와 이자를 포함한 미납 요금을 시의 재정 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 정한 1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 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인 재량으로 고객의 과도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 기간을 12개월보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관리 수수료: 납부 일정 조정이 승인되면 고객에게 관리 수수료가 부과되고, 금액은 시에서 일정을 착수하고 조정하는 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합니다.
3. 일정: 고객과 상의하고, 고객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시의 재정 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은 고객이 동의한 납부 일정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위의 항목 (1)에 따라 미납 요금과 관리 수수료가 수립된 지불 일정에서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대안 일정이 수립된 납부일과 일치하지 않는 일시불 기한을 제공하거나, 한 달보다 더 자주 납부할 수 있게 하거나, 매달 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합의된 일정은 서면으로 제시되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합의서는 City of Tustin, 300 Centennial Way, Tustin, CA 92780 주소지에서 고객이 직접 서명합니다.
4. 계획 준수: 고객은 반드시 납부 일정을 준수해야 하고, 각각 다음의 납부 기간에 축적되는 요금이 현재 유지됩니다. 고객은 이전에 합의된 일정에 따른 미납 요금 납부 기간 동안 다음 미납 요금에 대한 더 오랜 납부 일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합의된 60일 이상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혹은 현재 요금 납부 기한을 60일 이상 준수하지 못한 경우, 시 행정부는 고객의 거주지에 공급 중단 최후 통보 후 영업일 기준 최소 5일 뒤에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B. 납부 임시 연기: 일반 납부 기한 이내에 수도 요금 납부가 불가능하며 섹션 II(C)에서 정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시에서 확인한 고객은 미납 요금에 대하여 납부 기한 후 최대 6개월 동안 납부 임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재량으로 고객에게 연기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상환 기간: 고객은 미납 요금을 시의 재정 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 정한 연기된 날짜("연기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기된 납부 기한은 요금 미납일부터 6개월 내의 날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 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인 재량으로 고객의 과도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연기된 납부 기한을 6개월보다 더 길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관리 수수료: 납부 임시 연기에서는 고객에게 관리 수수료가 부과되고, 금액은 시에서 일정을 착수하고 조정하는 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합니다.
3. 축소된 납부일 준수: 고객은 반드시 잔액을 납부일 혹은 연기된 납부 기한 전에 납부해야 하고, 각각 다음의 납부 기간에 축적되는 요금이 현재 유지됩니다. 고객이 연기된 납부 기한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혹은 현재 요금 납부 기한을 60일 이상 준수하지 못한 경우, 시 행정부는 고객의 거주지에 공급 중단 최후 통보 후 영업일 기준 최소 5일 뒤에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C. 기한의 임시 연장: 일반 납부 기한 이내에 수도 요금 납부가 불가능하며 섹션 II(C)에서 정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은 미납 요금에 대하여 다음에 따라 도시가 선택한 본래 납부 기한의 연장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1. 빈도: 고객은 최근 12개월 동안 기한의 임시 연장은 1번으로 제한됩니다.
2. 상환 기간: 고객은 미납 요금을 관리 수수료와 함께 시의 재정 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 정한 합의된 기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관리 수수료: 기한의 임시 연장에서는 고객에게 관리 수수료가 부과되고, 금액은 시에서 일정을 연장하고 조정하는 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합니다.
4. 연체/주소지 방문 수수료: 고객은 합의된 연장 지불 기간 동안 연체 수수료와 주소지 방문 수수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5. 일정: 고객과 상의하고, 고객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시의 재정 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은 고객이 동의한 연장 납부 일정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합의된 연장은 서면으로 제시되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합의서는 City of Tustin, 300 Centennial Way, Tustin, CA 92780 주소지에서 고객이 직접 서명합니다.

6. 계획 준수: 고객은 반드시 납부 일정을 준수해야 하고, 각각 다음의 납부 기간에 축적되는 요금이 현재 유지됩니다. 고객은 납부 연장 기간을 더 길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연장된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혹은 현재 요금 납부 기한을 60일 이상 준수하지 못한 경우, 시 행정부는 고객의 거주지에 공급 중단 최후 통보 후 영업일 기준 최소 5일 뒤에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IV. 검토와 진정**: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된 모든 요금에 대한 이의 제기과 진정 절차는 아래에서 제시됩니다. 고객은 12개월 동안 3번의 진정을 요청할 수 있고, 3번이 완료되면 시 행정부는 고객이나 고객을 대신하여 제기된 다음 진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A. 이의 제기된 요금의 검토: 수도 요금 청구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고객은 청구서에서 명시하는 물 사용량, 요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요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재정 담당자(300 Centennial Way, Tustin, CA 92780)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 A에 따른 모든 검토 요청에는 반드시 요청과 주장하는 오류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가 검토 요청을 고려하고, 후속 조사를 하는 동안에는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 B. 연체 알림 검토: 연체 알림 통지서를 받는 모든 고객은 청구서에서 명시하는 물 사용량, 요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연체 알림 후 5일 이내에 연체 알림과 관련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의 항목 A에서 서술한 모든 요금에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 B에 따른 모든 검토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정 담당자(300 Centennial Way, Tustin, CA 92780)에 전달해야 하며, 반드시 요청과 주장하는 오류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가 검토 요청을 고려하고, 후속 조사를 하는 동안에는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 C. 재정 담당자의 검토: 위의 항목 A와 B에 따라 시기에 맞는 검토 요청은 시의 재정 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 검토하고, 검토 후 요금의 타당성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수도 요금이 잘못 책정되었다면, 시 행정부는 정정 사항을 제공하고, 정정된 요금은 정정된 청구서 날짜의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올바른 요금 청구서가 전송된 후 60일 이상 정정된 요금이 미납될 경우, 60일이 지난 후 다음 업무일에 수도 공급이 중단됩니다. 시 행정부는 고객에게 공급 중단 통지를 공급 중단 5일 전에 전달해야 합니다. 수도 공급은 미납 요금과 수수료, 적용 가능한 재연결 비용과 보증금이 모두 납부되었을 때만 복구됩니다.
  
2. 이의 제기된 수도 요금이 올바른 경우, 재정 담당자의 결정 후 3일 이내가 기한이며, 납부 가능합니다. 재정 담당자의 결정 시 고객은 시정 담당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진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진정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시정 담당자(300 Centennial Way, Tustin, CA 92780)에게 위의 항목 A(이의 제기된 요금)에 따른 검토 요청에 대한 진정인 경우 재정 담당자의 결정 후 7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하고, 위의 항목 B(연체 알림)에 따른 검토 요청에 대한 진정인 경우 3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시정 담당자는 진정서를 받고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며, 심리를 열기 최소 10일 전에 심리 시간과 장소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a. 위의 항목 A(이의 제기된 요금)에 따른 검토 요청에서 고객이 시정 담당자에 대한 진정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면, 요금은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본래 청구일 후 60일 이내에 요금이 완전히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시 행정부는 고객에게 위의 섹션 II(B)(1)에 따른 연체 알림을 전달해야 하고, 고객의 주소지에 수도 공급 중단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b. 위의 항목 B(연체 알림)에 따른 검토 요청에서 고객이 시정 담당자에 대한 진정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면, 서면 혹은 전화 통지 후 최소 24시간 후 다음 조건에 따라 대상 주소지의 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i) 연체 알림 통지서에서 알린 본래 60일 기한 만료, (ii) 진정 기간 만료.
  
  - c. 모든 과징구분은 다음 청구에 반영됩니다.

3. 모든 고객에 대한 수도 공급은 시정 담당자가 고객의 진정을 조사하는 동안에는 어느 때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시정 담당자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V. **수도 공급 복구:** 미납으로 공급 중단된 수도를 다시 공급받으려면 고객은 시의 현재 보증금 정책에 따른 안전 보증금과 시에서 정한 재연결 수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위의 섹션 II(E)(1)에서 정한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수도를 재연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 행정부는 고객이 미납 요금, 보증금, 적용되는 재연결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고 요청한 후 업무일 기준 다음 날이 끝나기 전에 재연결을 수행해야 합니다.

---

매슈 S. 웨스트  
시정 담당자

---

제이슨 알-이맘  
재정 담당자

---

에리카 N. 야스다  
시청 공무원